

**목재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** 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원목생산업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목(立木)·죽(竹)을 벌채(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하는 사업

| 구분  | 사업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기준   |         |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인력   | 자본금     | 시설  |
| 제1종 | 벌채 (벌채량 제한 없음)                     |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제2종 | 벌채 (벌채량 연간 5,000m <sup>3</sup> 이하) |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| 1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
2. 제재업: 목재를 제재(제재목,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,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,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, 그 제제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하는 사업

| 구분  | 사업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기준  |         |     |
|-----|---|---|---------|-----|
|     |   | 기술인력  | 자본금     | 시설  |
| 제1종 | 제재목 또는 단판(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·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)의 생산 |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| 3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제2종 |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| 제3종 |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한 목재제품                 |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| 5천만원 이상 | 사무실 |

|     |   |   |            |     |
|-----|---|---|------------|-----|
|     | 의 생산  |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<br>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<br>1명 이상  |            |     |
| 제4종 | 목탄, 성형목탄,<br>목재펠릿, 임산펠<br>릿, 목재칩, 톱밥,<br>목분(나무가루)<br>의 생산 |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<br>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<br>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<br>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<br>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<br>1명 이상 | 3천만원<br>이상 | 사무실 |

3. 목재수입유통업: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

| 사업 범위             | 등록기준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·유통 | 사무실 및 보관시설 |

비고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.